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5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를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분야에서 감면하여 선제적·적극적 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세목 및 대상자

- 가. 주민세 : 세대주, 개인사업장, 법인
- 나. 재산세 : 착한임대인

○ 세목별 감면내역

가. 관내 전 세대주

- 관내 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2021년 주민세 개인분 10,000원을 면제한다.

나. 관내 전 개인사업장 및 법인

- 관내 전 개인사업장에 부과되는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50,000원을 면제한다.

- 관내 전 법인에 부과되는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50,000원 ~ 200,000원을 면제한다.

다. 착한 임대인

- 건물 임대인의 경우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에 월 임대료 인하 금액에 대하여 감면 한다.
- 토지 임대인의 경우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1년 토지분 재산세에 월 임대료 인하 금액에 대하여 감면 한다.

※ 감면 적용 기준 : 임대료 인하 시작 월

○ 감면 추계액 : 351백만원 정도

구 분	건 수	세 목(천원)			비 고
		계	재산세	주민세	
계	19,323	351,690	11,000	340,690	종세제외
전 세대주	15,789	157,890	-	157,890	개인분
개인사업장	2,194	109,700	-	109,700	사업소분
법 인	1,318	73,100	-	73,100	
착한임대인	22	11,000	11,000	-	

○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지방세 감면』 의결 전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세목별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세

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 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재해의 종류)

4.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지방세 지원 기준 통보 공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730('21.2.15)]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참고 2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

인쇄 : 전형채 / 재무과 (2021-03-24 11:26:10)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 안전이 보입니다."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730(202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국민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입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군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국민,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별도 지침 전까지 각 시·군은 매주 월요일 기준(2.22부터 ~) 소속 시·군의 지방세 지원실적을 화요일 12:00까지 기존 서식(별도 통보 예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세정담당관실 김혜경 주무관 온나라메일로 매주 실적 제출

** 지방세 지원실적 관련 업무 담당자 제출 : 2021.2.18.(목)까지(온나라 메일)

시군명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사무실	핸드폰	

4. 더불어, 참고1 서식에 따른 지원실적 점검·관리 대장을 통해 실적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1부. 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경북) : 지방소득세 기한연장(33백만원)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예) 부동산 매매계약(1.30)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 연장 가능(6개월(최대1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